

[별표 2] <개정 2015.12.31.>

주요 국제행사 및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관련)

1. 주요 국제행사

- 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 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다.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 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 및 방법

가. 2015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분한다.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48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4를 배분

나.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각 조직위원회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배분한다.

다. 주요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그 국제행사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과 나목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배분비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국제행사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배분 비율을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배분비율과 그 외의 배분비율에서 각각 균등하게 조정하여 배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을 설치한 시·군·구,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시·군·구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은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